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6호, 2026. 5. 12.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자 지정시에도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안 제3조) 동순위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안 제5조의2)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를 “순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순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신청)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2. -----		-----
가. <u>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 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u>		법 제12조제4항--	<u>순위에 따</u>	<u>른다.</u>
		<삭 제>		

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
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람을 우선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
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
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생 략)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
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
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
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
에 따른다.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
수준 산정기준) 법 제12조제4항
제3호에서 “생활수준이 낮은 사
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
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
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
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
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u>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u>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5442